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헌혈 관련 공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의료 지원 〉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58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헌혈 관련 공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의료 지원	2

I. 개요

1.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58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4. 4.

(3) 회 부 일 : 2025. 4.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예우를 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헌혈 관련 공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의료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건강검진비”) 및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의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u> (생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의 취지는 헌혈자에게 보다 실질적이며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이 헌혈에 대해 긍정적 효능감을 가지는 데 영향을 주어 헌혈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의료 지원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건강검진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건강검진 및 건강상태 검사와 관련한 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음.

- 첫째,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에 대해 헌혈 사전 및 사후에 혈액·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사전검사] 혈액소(빈혈검사), 혈소판 수 측정, 혈액형(혈구형), 몸무게·혈압·맥박·체온, 문진 등

[사후검사] ① 기본검사: 혈액형 검사(ABO식·Rh(-)식, 혈액형아형, 비예기항체), B형간염(면역검사, 핵산증폭검사)·C형간염(면역검사, 핵산증폭검사),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 검사(HTLV 감염 여부), 매독항체·말라리아항체 검사, ALT 검사, 총단백 검사

② 추가검사¹⁾: AST 검사, 알부민 검사, 총콜레스테롤 검사, 혈중요소질소 검사

-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국민에게 무상²⁾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매년), 6대 암(위·대장·유방·자궁경부·간·폐암)에 대해서도 연령 등 고위험군 기준에 따라 암검진³⁾을 제공하고 있음.

1) 30대 이상 해당년도 전혈 2회 이상 헌혈자, ABO프렌즈 가입 헌혈자 등에 한해 연 1회 제공되고, 헌혈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 전액 부담(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가·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 셋째, 헌혈은 대가적 급부(給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무상의 자발적 기부행위로서,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에 기반⁴⁾함. 헌혈자에게 고액의 지원이 실시될 경우 이와 같은 헌혈의 기부적 성격이 퇴색되고, 이익이나 대가를 위하여 혈액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우려가 있음.

「혈액관리법」 또한 헌혈이 무상제공 행위임을 규정하고(제2조 제4호⁵⁾), 혈액이 금전·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에 따라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제3조⁶⁾).

* 참고로, 2005년 보건복지부는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단체 헌혈에서 개인·등록헌혈자 중심으로 헌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회헌혈자에게 건강검진권을 지급하는 헌혈증진사업⁷⁾을 추진함.⁸⁾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해 건강검진 목적의 헌혈 조작, 잘못된 헌혈 인식 및 대가성 급부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2009년 제3차 혈액관리위원회에서 동 사업은 폐지되고 대체사업(문화이벤트, 등록헌혈회원 영양제 제공 등)으로 실시하기로 함.

3) 암검진 종류·의료급여 지급자 여부 등에 따라 비용 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일반 대상자의 경우 위·유방·간·폐암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수검자가 10% 부담하며, 대장·자궁경부암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함(2025년도 기준).

4)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헌혈지식-헌혈의 필요성
<<https://www.bloodinfo.net/knrcbs/cm/cntnts/cntntsView.do?mi=1043&cntntsId=1001>>

5) 「혈액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주요내용]

- 대상 및 금액: 연 5회 이상 등록헌혈자에게 건강검진권 지급

- 예산(2005년 기준): 21억원(3만명×1인당 7만원)

- 재원: 혈액수가(혈액자 관리비) 인상

(보건복지부, “핵산증폭검사 도입 등 혈액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혈액수가 인상” 보도자료, 2005. 1. 26.)

8) 다만, 이후에 동 건강검진권 지급 사업은 실제로 실시되지는 않고 사업예산은 대한적십자사의 타 사업에 전액 사용됨.

(KBS뉴스, “적십자사, 헌혈 장려 사업 예산 전용”, 2008. 11. 1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670990>>)

□ 다음으로 의료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사항이나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헌혈자에게 독감 예방접종·스케일링, 보건소 진료비 면제 등의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참고] 별첨).⁹⁾

□ 한편, 헌혈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어 있어, 법안 심사 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2025. 1. 22., 의안번호 제7720호)¹⁰⁾

* 주요내용: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혈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중검토 필요

9) 또한, 이외에도 각 지자체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8 및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헌혈 장려·지원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헌지 실정 및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헌혈자에게 지자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 상품권·지역화폐·기념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음([참고] 별첨).

「혈액관리법」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계류 중(2025. 7. 기준)

- 건강검진·의료 지원 비용은 고액의 인센티브로 순수한 헌혈이 아닌 대가적 급부로써 헌혈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헌혈을 할 수 없는 국민과의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미 건강보험공단의 전 국민 대상 건강검진과 헌혈 시 헌혈검사 결과 제공이 실시되고 있어 추가적인 건강검진 제공의 실익이 크지 않음.
- 또한, 2005년 혈액수가 인상 시 다회헌혈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비용이 포함되었으나 낮은 검진비용단가, 대상자 선정기준의 모호성, 대가성 급부 발생 우려 등의 의견이 있어, 영양제 지원 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

□ (대한적십자사)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자 예우 강화와 다회 헌혈자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하나, 대상자 특정, 의료 지원 범위,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대한 관련기관의 검토 및 대가 없는 순수 무상헌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지방자치단체 헌혈자 예우 및 지원 주요 사례 (2025년 기준)
-------------	--

구분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 허가 - 헌혈 독려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
부산광역시	- 헌혈 유공자 포상(부산시장, 연 15점) - 다회 헌혈자(100회 이상) 추가 인센티브 지급(부산혈액원 연계)
대구광역시	- 시·구·군 주관 단체헌혈을 통한 헌혈 증진(분기별 1회) - 헌혈장려 홍보를 통한 헌혈 환경 조성 및 참여 독려(라디오 홍보, 혈액수급 위기단계 보도자료 배포, 시정홍보 전광판, 시내버시 승강장, 도시철도 역사 전광판) - 헌혈 유공자 포상 : 4점(훈격 : 대구광역시장) - 대구·경북혈액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급 * 3회 이상 전혈 유지, 혈소판 12회 이상 1만원. '25년 인천시 관내 대학생 단체 헌혈버스 참여자(전혈) 1만원 등 - 다회 헌혈자 및 단체헌혈 관계자, 기관 등 헌혈증진에 기여한 인천시민 및 단체 유공자 표창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공가 허가 및 상시학습(4시간) 인정
광주광역시	- 다회헌혈자 2년간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 감면 * 감면증 발급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10회 이상 헌혈자 - 시 운영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시 운영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용료 20% 감면 - 시 운영 문화시설 이용료 20% 감면 - 공직자 단체헌혈 참가 공무원 대상 공가 허가
대전광역시	- 혈액수급위기단계에서 일정 기간 헌혈한 헌혈자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 - 관내에서 헌혈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헌혈에 참여하는 공무원 대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1일) 허가
울산광역시	- 혈액수급 비상시기에 일정기간 헌혈한 헌혈자에 대하여 1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 헌혈문화 확산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헌혈 유공자 표창패 수여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공가 허가
세종특별자치시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공가 허가, 상시학습 인정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시민 대상 봉사 시간 부여 - 헌혈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
경기도	- 6.14. 헌혈자의 날 프로모션 진행, 헌혈기념품 구매 및 배포 - 다회헌혈자 및 헌혈추진협의회 대상 헌혈문화 이벤트 행사 실시 - 헌혈 증진 홍보사업, 홍보물 제작 등
강원특별자치도	- 도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지급 - 헌혈권장 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
충청북도	- 도청 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단체헌혈 지원 - 헌혈 유공자 발굴 포상(도지사 표창) - 헌혈 장려 홍보 물품 제작, 전광판·홈페이지 등 헌혈 홍보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에게 공가 4시간 이상 허가, 상시학습 4시간 인정
충청남도	- 헌혈증진 유공 개인 및 단체 도지사 표창 - 헌혈권장 및 홍보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 도비 지원 - 연 6회 대한적십자사의 대전·세종·충남혈액원 헌혈버스 지원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상시학습 2시간 인정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주관 상시학습(사회복지교육) 4시간 인정 - 헌혈에 참여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허가 -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전라남도	- 도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감면 - 헌혈 1회당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1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지급
경상북도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에게 공가, 상시 학습 인정 - 헌혈 참가 시 기념품 지급 - 헌혈 유공자에 대해 표창
경상남도	- 헌혈자의 날 유공 도지사 표창 수여 - 공무원 대상 헌혈 시 공가 사용 및 상시 학습 인정
제주특별자치도	- 수혈용 헌혈자에게 1회당 5천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지자체-혈액원 연계) -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 시 상시학습(4시간) 인정 - 헌혈증(2년 이내) 소유자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구분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북구	- 연 3회 이상 헌혈자 또는 누적 헌혈 횟수 100회이상 헌혈자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료 20% 감면 - 연 3회 이상 : 1년 감면 - 누적 헌혈 횟수 100회 이상 : 기간 제한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관내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해당연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1.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단,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춘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및 1시간 초과분 감면 3. 헌혈자에게 1회당 5천원 지역상품권 지급 - 헌혈권장사업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음
	원주시	-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포상 -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에 수혈용 헌혈자에게 기념품, 지역상품권 등 지원 - 헌혈자에 대해 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음
	태백시	-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 - 당해연도 헌혈자에 따른 보건소 독감 무료접종 - 당해연도 태백에서 헌혈한 생애첫 헌혈자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지원(1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헌혈자에 대해 1회당 1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예산의 범위 내) - 헌혈자 대상 보건소 진료비 면제(1년간 전액) - 헌혈자 대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1년간 50%)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공무직 대상 헌혈에 직접 필요한 시간 만큼 공가 허가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공무직 대상 특별휴가 허가(헌혈일로부터 1개월이내)
전라남도	목포시	- 1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온누리 또는 목포사랑) 지급 -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연간 3회이상 헌혈(전혈,혈소판 성분헌혈) 또는 12회 이상 헌혈(혈장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의 포상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 허가
	무안군	- 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영광군	- 영광군(보건소사업)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1회당 3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및 기념품 제공 - 헌혈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포상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 허가
경상북도	안동시	- 안동시민에 한하여 헌혈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진료비 감면 - 독감예방접종 1회 무료 시행 - 안동시민에 한하여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안동사랑 상품권 지급 - 안동시민에 한하여 헌혈 당일 안동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공가 허가, 상시학습 4시간 인정
	구미시	- 독감예방접종을 헌혈 한 날부터 1년 내 한 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 - 단체헌혈 참여 시 소정의 기념품 지급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공가 허가
	문경시	- 문경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자(전혈)에게 1회당 1만원 상당 문경사랑상품권 지급 및 보건소 무료 스케일링 지원
	칠곡군	- 헌혈한 헌혈자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 허가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상시학습 4시간 인정
	예천군	- 예천군 내에 설치된 헌혈 장소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 지급 - 헌혈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1회 무료 시행(주민등록상 예천군 주소에 한함) - 헌혈에 참여하는 공무원 대상 상시학습 및 공가 허가
	봉화군	- 헌혈자를 대상으로 홍보물품 및 소정의 기념품(커피쿠폰) 지급 - 헌혈 참여시 회복을 위해 공무원 대상 공가처리 - 헌혈 참여시 자원봉사시간 및 상시학습 인정 - 봉화군 군민 대상 보건소 진료비 면제(1년이내)

주: 지자체 헌혈자 예우 및 지원의 주요 사례 자료로,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헌혈자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 중

자료: 보건복지부